

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독서문화진흥사업 참가자 및 지원 대상자에게 상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 읽는 문화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체적인 사업명과 대상별 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나. 종전의 한책하나구미운동 사업 종료에 따른 조항 삭제(안 제8조, 안 제10조)
- 다.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라. 사업 참가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상품권 등 지급 조항 신설(안 제1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독서문화진흥법」, 「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성별·연령별·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
9. 지역작가 지원 및 참여 사업

제7조 중 “지정·운영한다”를 “운영한다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전문강사 초빙) ① 시장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포상 등)”을 “(기념품 제공 및 포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1항) 중 “포상”을 “「구미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”으로 한다.

-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등 행사 참가자
2.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 및 북스타트, 북돋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대상자
3.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
4.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참가자
5.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동아리 참가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권의 책을 선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선정된 “올해의 책”은 릴레이 독서 용도로 보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1. ~ 5. (생략)
6. 한책 하나구미 운동에 관한 사항
7. (생략)

제18조(포상 등) <신설>

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- <삭제>

6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제18조(기념품 제공 및 포상 등)

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등 행사 참가자
2.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 및 북스타트, 북돋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대상자
3.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선

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정된 사람

4.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참가자

5.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동아리 참가자

② -----

-----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
에 따라 포상 -----

<삭 제>

관계법령

□ 「독서문화진흥법」

제9조(지역의 독서 진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(독서의 달 행사 등)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, 독서 관련 행사, 포상·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시행령

제11조(독서의 달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독서 관련 단체,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.

1.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·발표 등 학술 행사
2. 백일장·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
3.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
4.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
5.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

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(제18조 제1항)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 : 시립중앙도서관 독서진흥팀 사서8급 정상완(480-4672)

소 관 부 서		시립중앙도서관
입	과 장	이 선 임
안	팀 장	최 희 경
자	담 당 자	정 상 완 (480-4672)